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3년 5월

## 전문가 기고

ESG 경영 그리고 그린워싱 리스크관리

##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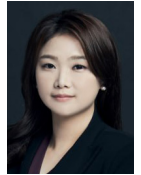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 ESG 동향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의결

## 주요 통계

# ESG 경영 그리고 그린워싱 리스크관리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이준희 그룹장

지난 3년동안 한국 기업들은 ESG경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경영체계와 관리를 고도화하고 있다. 저탄소 친환경 비즈니스로의 전환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제품과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담은 ESG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홍보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다. 최근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 개정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의 ESG 패러다임에서 '그린워싱 리스크'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영관리(management)중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업의 그린워싱은 소비자, 투자자 등으로부터 더 큰 호응과 평판을 얻기 위해 마케팅과 홍보를 과장하는 것인데, 두 가지 수준(level)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기업 전체적 이미지와 브랜드 홍보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구체적인 제품과 서비스 단위의 홍보 마케팅에 의한 것이다. 최근 ESG 패러다임에서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와 NGO로부터의 그린워싱에 대한 이슈는 확산 중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세탁세제 및 살균제 같은 화학제품 등이 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친환경' '무해성' 문구 등과 유사한 표현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 어느 화장품 용기가 플라스틱 사용량 절반으로 줄였으나 "페이퍼 보틀"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상품이 마치 친환경 패키지와 오해하게 하여 소비자들 SNS에 과대 및 거짓 홍보를 한다는 이슈 제기 등이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관련 소송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외 그린워싱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친환경 광고, 표기 등에 대한 공정거래 준수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고 있다. EU의 에코라벨 제도는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친환경성에 대한 인증에 대한 것이다. 올해 개정된 우리나라 '표시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서도 소비자 '기만성' '오인성' 등의 문제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기 광고 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21년 국제상공회의소(ICC)는 기후관련, 순환성, 분해성 주장 등 기존 환경 이슈에 추가지침 및 재활용 식별코드 사용에 대한 지침을 추가 개정하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2023년 하반기 환경부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친환경 홍보마케팅 활동 등에 대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을 준비 중이다. 심사지침은 예규로,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최근 1-2년 사이에 마치 ESG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과 사회적 우려를 잡으려고 하는 듯 그린워싱 규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린워싱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린워싱으로 인정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은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확립하고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체계 내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선 그린워싱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아래 표에서 살펴보면, 현재 미국 UL이 인수한 글로벌 환경 컨설팅 기업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의 2007년 7대 항목(sin)이 대표적이다. 특히 2009년에 추가된 '허위라벨 부착'은 비즈니스 제품 단위의 친환경 오인성에 대한 것이다.

## 그린워싱 7개 항목

1. 상충효과 감추기 (Sin of the hidden trade-off)	일부 속성에 기초하여 친환경화적이라고 주장 행위
2. 증거불충분 (Sin of no proof)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으로 입증되지 않은 환경적 주장
3. 애매모호한 주장 (Sin of vagueness)	너무 포괄적이거나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가 의미를 오해할 수 있는 주장
4. 허위라벨 부착 (Sin of worshipping false labels)	단어 또는 이미지를 통해 제3자의 인증 또는 검증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제품
5. 관련성 없는 주장 (Sin of irrelevance)	친환경적 제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적 주장
6. 차악 선택 (Sin of lesser of two evils)	범주가 전체적으로 환경적이지 않지만, 그 범주에 있는 다른 제품 보다 환경적이라고 주장
7. 거짓말 (Sin of fibbing)	사실이 아닌 점을 광고

# ESG NEWSLETTER






앞으로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의 기업 ESG경영의 중요한 경쟁력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정보의 명확한 표기,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교, 과학적 근거제시, 정보의 과장 금지 등의 그린워싱 관련 커뮤니케이션 원칙은 ESG 경영의 핵심인 기업의 진정성(integrity)과 이해관계자 신뢰(trust)라는 점에서 기업경영관리의 원칙이기도 하다.






그린워싱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정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마케팅·영업, 홍보·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법무, 감사(내부감사)등의 유관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process)와 프로토콜(protocol) 재정립이 필요하다. 더 이상 그린워싱 리스크는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홍보나 마

케팅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 하여 전사 ESG 경영 내재화(embedding)을 위한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쌍방향의 관점에서 그린워싱이 갖는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 사이의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아서 기업의 평판과 신뢰를 관리하는 경영 기법은 ESG 패러다임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의 저상장 고위험 시대에 스마트하게 살아남는 기업 경영전략이 갖는 균형감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및 지침

국가	법률(연도)	주요 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년 개정)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하며,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제공 - 제3조 제1항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15년 개정)	- 친환경 광고, 표시의 경우 용어 또는 라벨 사용에 있어 '환경성 기준으로 "거짓 또는 과장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 비교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금지 규정 -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예정 (23년 개정안 발의 완료)
	소비자보호법 (21년 개정)	- 상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적 평가 기준 제시하며, 기준에 따른 정보제공 의무 이행 못하는 경우 친환경 홍보 불가능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경우 환경과 관련 정보 제공하는 라벨링 의무화
	에코라벨 제도 (20년 개정)	- 새로운 소비자 의제(New Consumer Agenda) 발표하며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에코라벨' 제도 규정하여 동일한 그룹의 다른 제품보다 환경에 피해를 적게 주는 제품 및 서비스에 부여 - 정부 또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이 상품이 친환경적임을 인증해주는 표시이며 인증된 기준에 따라 제조된 상품임을 증명함
	캘리포니아주 사업 및 전문직업법 및 공공지원법 (21년 개정)	- 제품 또는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광고를 위하여 거짓되거나 기만적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마케팅 금지 - 포장 용기에 표시 가능한 친환경 관련 문구 및 라벨 종류 규정 - 정보공개 의무화 - 재활용 가능성 기준 규정

국가	법률(연도)	주요 내용
	그린워싱 규제 가이드라인 (23년 예정)	- 환경부는 '23년 3월 그린워싱 규제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으며, 산업계 관계자 및 기술솔루션, 녹색소비자 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구축 - 어떤 홍보 활동에 대해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등 논의 예정
	Directive on Green Claims (23년 제안)	- 유럽연합 전체에서 녹색/환경성 주장의 신뢰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EU 2050 기후중립 달성 및 녹색전환을 위한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안됨 - EU 회원국에서 친환경 주장 및 라벨이 사용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LCA)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독립적인 사전검증을 통해 증명 및 신규 라벨 개발 신청 요구
	Green Claims Code ('21년 발표)	- 기존의 '소비자 보호 규정'에서 금지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기준과는 별도의 친환경을 주장하는 경우 고려해야할 사항 규정함 (진실하고 정확한 주장,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주장, 정보의 공시, 공정하고 의미있는 비교,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생산주기를 고려한 주장, 입증할 수 있는 주장) - 지침의 내용은 영국의 '적합성 평가(UK Conformity Assessment) 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됨
	FTC(연방거래위원회) Green Guides('12년 발표)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를 수립하여 제품 또는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광고를 위하여 거짓되거나 기만적(deceiving) 또는 오해의 소지(misleading)가 있는 환경 마케팅 금지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 실시
	ICC 책임있는 환경 마케팅 지침 (21년 개정)	- ICC Code와 Chapter D에 근거하여 책임있는 환경성 마케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2021년 11월 기후 관련 주장, 순환성 주장, 무함유 주장 등에 대한 지침을 추가한 개정본 발간 - 소비자 오인성 관련, 검증 및 입증 기반 서술 등과 관련하여 ICC코드, Chapter D, 기타 고려사항을 3단으로 비교하고, 특정 환경성 주장 별로 적용되는 ICC 원칙 및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 및 환경성 주장 체크리스트 공시

#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박경원 연구위원

태양광, 풍력, 배터리, 탄소포집·저장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EU의 탄소중립산업법이 발표되었다. 세계 경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과 저탄소 전환, 에너지안보 확립, 에너지 신산업 발굴을 위한 포괄적인 에너지·경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① 주요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그린딜 산업계획(European Green Deal Industry Plan, '23.2)의 일환으로 주요 탄소중립 기술의 역내 제조능력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자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을 발표하였다('23.3).

제시한 법안의 초안에서는 2030년까지 8대 탄소중립 핵심 분야의 제조 역량을 역내 기술 수요의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고자 감축잠재량이 크고 조기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탄소중립 전략프로젝트(Net zero Strategic Project)'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기술(Net zero technologies)'을 선정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포집·저장 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탄소 포집 목표를 수립하였다.

탄소중립산업법의 최종 목표는 탄소중립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주요 추진전략은 △규제 개선, △탄소포집·저장 기술 역량 강화, △인력 양성, △재정지원 확대, △기술혁신 가속화, △정보교류 플랫폼 구축이다.

규제 개선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술 분류 및 규모에 따른 사업 인허가 시한을 설정하여 해당 분야의 인허가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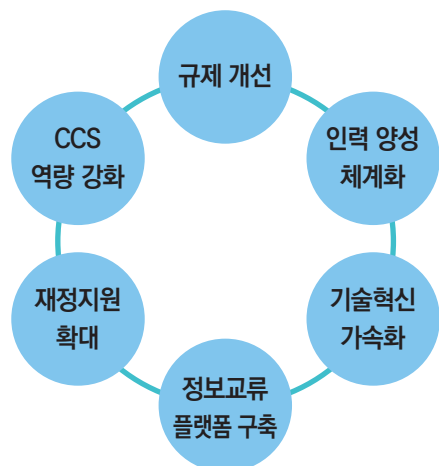
또한 탄소포집·저장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석유 및 가스 생산기업에게 탄소저장 목표를 부여하고(연간 50만톤,~'30년), 탄소포집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탄소중립 산업 아카데미(Net Zero Industry Academy)를 설립하여 역량강화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린딜의 InvestEU 프로그램과 함께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유럽수소은행(European Hydrogen Bank)을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법·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 하는 방안과 탄소중립 유럽 플랫폼(Net Zero Europe Platform) 구축을 통해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법안의 목표 이행 상황 점검도 초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추진 전략



## ② 시사점

본 법안은 EU 역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달리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정책 우선순위와 구체적 자금조달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회원국 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EU 산업계는 일부 기술의 경우 본 법안에서 수립한 역내 제조 비중 목표가 낮고(既 달성), 역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재정 지원 전략과 인센티브 제도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향후 對EU 수출기업에게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산업법안의 최종 발표 및 시행까지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탄소중립산업법은 청정기술 분야 핵심 산업 육성에 대한 EU의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탄소중립 지원 정책이 역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지급에 집중된 것과 비교하여 규제개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우리도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혁신 기반 국가 전략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포괄적인 에너지-산업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탄소중립산업법의 기술 구분과 지원방안

	탄소중립 전략프로젝트 (Net zero Strategic Project)	탄소중립 기술 (Net zero technologies)
기술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양광 및 태양열 기술</li> <li>육상 및 해상풍력 기술</li> <li>배터리 및 저장장치 기술</li> <li>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기술</li> <li>수전해 및 연료전지 기술</li> <li>바이오가스 및 바이오 메탄 관련 기술</li> <li>탄소포집·저장 기술</li> <li>그리드 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생에너지 기술 전반</li> <li>전력 및 열 저장장치 기술</li> <li>연료대체 기술</li> <li>폐기물 최소화를 전제로 원자력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첨단 기술</li> <li>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술</li> <li>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li> <li>에너지효율 기술 등</li> </ul>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IEA) 8이상의 상업적 시연을 본격화 하는 단계의 기술로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Fit for 55)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기술 범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성숙도 8 이상의 탄소중립 기술 전반 포괄</li> </ul>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허가시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생산용량 1GW 미만 최대 9개월</li> <li>- 연간 생산용량 1GW 초과 또는 CCS와 그리드 분야 최대 12개월</li> </ul> </li> <li>공공조달 확대, 소비지원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허가시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생산용량 1GW 미만 최대 12개월</li> <li>- 연간 생산용량 1GW 초과 또는 CCS와 그리드 분야 최대 18개월</li> </ul> </li> </ul>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의결



박현준 연구원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3.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동 계획안은 2030 NDC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여건과 실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향후 기업에 경영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동 계획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년 4월, 정부는「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부문·연도별 종합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은 3대 정책방향(책임있는 실천·질서있는 전환·혁신주도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하에 4대 전략 및 12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구체적·효율적 탄소중립 전략에는 ①원전확대 및 미래형 전력망 구축을 통한 전원믹스 합리화 등 무탄소 전원의 최대 활용, ②세액공제·금융에 기반한 순환경제(연·원료→공정→제품→재활용) 활성화 지원을 통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③제로에너지 건물 및 무공해 모빌리티 확산 등 국토의 저탄소화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민간주도의 혁신적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은 ④기후기술 전과정 관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과학기술 및 규제 혁신 가속화, ⑤원전·무공해차 등 탄소중립 관련 미래 핵심산업의 육성, ⑥기후대응기금 및 K-텍소노미 활성화 등 친탄소 재정·금융 프로그램 운영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함께하는 탄소중립 전략에는 ⑦국민의 에너지 소비절감 및 탄소중립 실천 촉진, ⑧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녹색성장 수립 등 지방 중심 탄소중립 가속화, ⑨내연기관 부품기업 친환경 전환, 기후창업 촉진 등 산업·일자리 전환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국제사회 주도 능동적 탄소중립 전략은 ⑩정부-산업계 거버넌스 구축 등 적응주체 협력기반 강화, ⑪주요국과 기후대응 연대 강화 등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화, ⑫과학적 성과평가시스템 개발 등 탄소중립 전 과정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기본 계획안으로 5년간('23~'27년) 89.9조원의 재정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동시에, '30년까지 GDP와 고용이 연평균 각각, 0.01, 0.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5년마다 탄소중립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탄녹위·중앙부처·지자체간 매년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이행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

수정 2030 NDC 주요 변경내용

단위: 백만톤CO<sub>2</sub>e('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18 배출량	기존 NDC('21.10)	수정 NDC('23.3)
배출	전환	269.6	149.9(44.4%)	145.9(45.9%)
	산업	260.5	222.6(14.5%)	230.7(11.4%)
	수소	-	7.6	8.4
흡수·제거	CCUS	-	-10.3	-11.2
	국제감축	-	-33.5	-37.5

※ 출처: 관계부처합동('23.4)

# ESG 통계 지표

2023년 4월 30일 기준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개)

	'2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3월	4월
녹색채권	186	188	199	203	201	200	212	212	213	215	221	227
사회적채권	912	946	966	1,006	1,032	1,045	1,069	1,070	1,083	1,103	1,138	1,164
지속가능채권	279	304	305	309	308	309	300	299	298	300	299	297

###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천억 원)

	'2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3월	4월
녹색채권	185	186	191	194	193	193	200	200	201	205	210	215
사회적채권	1,400	1,428	1,460	1,523	1,547	1,558	1,586	1,572	1,565	1,576	1,638	1,666
지속가능채권	199	213	217	220	219	218	213	213	213	213	212	211

## 2. ESG 평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2023. 4. 기준)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4	14	10	8	8	14	20	38	78	131	1	336

###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2023. 4. 기준)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적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41	1,241

자료: KRX ESG 포털

## 3. 기타 통계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 선언 기업 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한국	-	4	3	12	70	64	14	167
글로벌(전체)	281	298	395	732	1,253	1,189	341	4,489

자료: <https://www.fsb-tcfid.org/>

## 2023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2월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 금융의 역할

3월 |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4월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5월 |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6월 |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 과제

7월 |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 고시 해외 논의 동향

8월 |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과 활용방안

9월 | 탄소중립 분야 국가 R&D 현황 및 과제

10월 |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개선과제

11월 | ESG 기업 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12월 | UN기후변화협약 결과와 의미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박경원 연구위원

T. (02)6050-3134 | E. kwpark@korcham.net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의결

박현준 연구위원

T. (02)6050-3139 | E. parkhj@korcham.net

### ESG 통계 지표

한주연 연구위원

T. (02)6050-3143 | E. jooyeon@korcham.net